

2011년도 신성장동력 투자펀드 출자금 운용사 추가모집 계획 공고

2011년도 신성장동력 투자펀드 출자금 운용사 추가모집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1

개요

출자규모 : 200억원 이내

기본조건

- 투자기간 내 결성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정부가 선정한 신성장동력 분야의 신기술을 사업화·산업화하고자 하는 기업 및 프로젝트에 전문적으로 투자

선정대상 및 신청자격

항 목	세 부 내 용		
선정 대상 및 신청 자격*	사모투자전문회사	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268조에 의한 사모투자전문회사	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272조에 의한 업무집행사원
	신기술사업투자조합	「여신전문금융법」 제41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	신기술사업금융업자
	창업투자조합	「중소기업창업지원법」 제20조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	창업투자회사

* 유한회사 등 기타 선정대상 및 신청자격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협의

2

출자대상

정부가 선정한 17개 신성장동력 중 택일하여 단일 전문펀드를 신청

< 신성장동력 전문펀드 투자분야 >

3대 분야	17개 신성장동력
녹색기술산업(6)	신재생에너지, 탄소저감에너지, 고도물처리, LED용융, 그린수송시스템, 첨단그린도시
첨단융합산업(6)	IT융합시스템, 방송통신융합산업, 로봇용융, 신소재·나노융합, 바이오제약(자원)·의료기기, 고부가식품산업
고부가서비스업(5)	글로벌헬스케어, 글로벌교육서비스, 녹색금융, 콘텐츠·소프트웨어, MICE·융합관광

3

선정 우대 및 배제(취소) 기준

□ 선정 우대기준

-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이외 출자자의 출자의향서(LOI, LOC) 등을 제출한 경우(서면으로 확인된 경우)
- 결성총액 대비 외국자본의 출자비중이 높은 경우(서면으로 확인된 경우)
- 업무집행사원의 출자비중이 높은 경우
- 그린수송시스템, 로봇용융, 신소재 · 나노융합, 바이오제약(자원) · 의료기기 등 4대 신성장동력 전문펀드를 조성할 경우

□ 선정 배제

- 업무집행사원이 고의 또는 악의적으로 법령 위반 상태이거나 과거 법령위반 등을 감안하여 펀드의 성실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- 회사 및 펀드 운영상 도덕적 해이 또는 제3자 경유 등을 통해 사실상 법령을 위반한 상태라고 판단되는 경우
- 투자업체 발굴 및 투자 의사결정 과정에서 대주주 등 외부의 압력으로 업무집행사원의 독립적 의사결정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
□ 선정 취소

-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펀드의 최소 결성 규모에 미달하는 경우

- 평가위원회가 결정한 출자조건을 운용기관이 수용하지 않아 규약 협의 등 후속업무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
- 운용기관이 출자의향서 형태의 서면으로 제출하였으나, 그 사실이 허위 또는 의도적인 조작으로 밝혀지는 경우
- 운용기관이 법령위반 또는 시정명령 미이행 상태이거나 기타 우회적인 방법 등으로 사실상 법령위반 상태에 있어 펀드의 성실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- 펀드 선정 후 결성 총회까지 당해 펀드의 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
 - * 선정된 운용사의 대표이사, 대표펀드매니저 등에 대한 신용조회를 통해 도덕성을 검증하여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포함

4

주요 출자조건

□ **한국산업기술진흥원 출자금액** : 펀드 결성제안금액의 20% ~ 40% 이내

□ **펀드운용사 의무출자비율** : 펀드 결성제안금액의 1% 이상

□ **결성규모** : 최종마감(Final Closing)시의 펀드약정총액은 500억원 이상

□ **한국산업기술진흥원 우선손실충당** : 우선손실충당금 없음

□ **투자의무비율**

- 투자기간 내 결성액의 50% 이상(단, 펀드약정총액 초과 결성금액은 자율적 투자 허용)

* 결성액의 35% 이상을 전문펀드 조성목적 분야에 투자하되, 결성액의 15% 범위 내에서 전문펀드 조성목적 외 신성장동력 분야에 투자 가능

- 지역적으로는 국내 기업에 투자금액의 80% 이상 투자

* 펀드약정총액의 30% 이상이 해외자본일 경우 국내기업 투자의무를 최대 60%까지 하향

□ 펀드존속기간 및 투자기간

- 존속기간 : 8년 이상, 사원(조합원) 특별결의로 2년 이내 연장 가능

* 상기와 다른 존속기간 설정의 경우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협의

- 투자기간 : 설정된 존속기간의 2분의 1

* 상기와 다른 투자기간 설정의 경우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협의

□ 출자금 납입방식 : 일시납, 분할납(draw-down), 수시납(capital call) 중 선택 가능

□ 출자금 마감방식 : 추가 증액방식(Multiple Closing) 허용

* 최초결성액(First Closing)이 결성제안금액의 70% 이상인 경우 우선 Launching 가능

□ 관리보수

- 결성일부터 2년이내 : 펀드약정총액의 2.5% 이내

- 결성일부터 2년이후 : 투자잔액(일일평잔 또는 분기평잔)의 2.5% 이내

□ 성과보수

- 기준수익률 : IRR 5% 이상

- 기준수익률 초과하는 수익의 20% 이내

□ 수탁회사

-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수탁기관 협약을 체결하여 지정하는 금융기관을 수탁 기관으로 선정하여 펀드자금 관리

- 펀드재산의 관리는 수탁회사와의 업무지시서를 통해서만 가능

□ 핵심인력

- 대표펀드매니저(Keyman)는 결성금액의 70% 투자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다른 펀드의 펀드매니저 겸임을 제한

지속가능경영 준수 의무

- 펀드가 투자하는 기업은 「산업발전법」 상의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 준수 의무(같은 법 제19조)

기타사항

- 기타 세부 출자조건은 선정된 업무집행사원(조합원)과 개별 협의

5 선정 절차 및 일정

선정 절차

- 제안서 접수 → 1차 심의(서류 심사 및 현장 실사) → 2차 심의(발표 심의)
→ 최종 선정

선정 일정

일자	내용	비고
‘11. 8. 24(수)	제안서 접수 마감	17:00 까지
‘11. 9월	최종 선정결과 발표	개별 통지
‘11. 12월	펀드 결성 완료	최종 선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

* 세부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6 지원방법

지원 방법

- 제안서 양식(별첨 참조)에 의거한 제출서류 및 그 내용을 포함한 CD 1매를 지정된 접수처에 접수마감일까지 제출

※ 제안서 양식 다운로드 : www.kiat.or.kr

접수 마감일 : 2011. 8. 24(수) 17:00 도착분에 한함

7**기 타**

- 제안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중대한 오류 등의 허위사실 기재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, 선정 이후에도 선정 취소 및 동 펀드의 참여 제한 조치함

8**접수처 및 문의방법**

- 접수처 :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금융TF
(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6층)
- 문의방법 : 사업화금융TF 전화(02-6009-4341, 4343, 4346)
E-mail(gamsa9@kiat.or.kr)

2011년 8월 11일

한국산업기술진흥원 원장